

■ 치과 칼럼

충치의 원인과 예방

A. 원인
치아는 크게 제일 바깥쪽인 에나멜(enamel), 그 안쪽의 상아질(Dentin) 그리고 제일 안쪽의 치수(pulp)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치는 우리 몸의 가장 단단한 부위인 에나멜이 설탕을 많이 포함하는 음식물 섭취 시 입안의 세균에 의해 부식이 시작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세균(S. Mutants 라 불리우는 충치 유발균)이 자신의 주 연료인 설탕을 섭취하고 강력한 산(Acid)을 내뿜어 에나멜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B. 증상
충치가 에나멜에 국한될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이유는에나멜 안에는 신경조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치가 계속 진행돼 상아질까지 파괴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아질부터는 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치아가 외부 자극에 반응해 통증이 느껴집니다. 충치균이 에나멜에서 상아질로 침범하는 단계에선 찬 음식을 먹으면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상아질 안쪽 즉, 신경조직이 들어 있는 치수로 충치가 진행되면 차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생기고 씹을 때도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에나멜의 충치 진행 속도에 비해 상아질에서의 충치 진행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이를 방지하면 충치균은 치아의 제일 안쪽 부위인 치수로 침입합니다. 이때부터 심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치수는 신경, 혈관, 세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외부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이를 방지하면 염증이 생겨 외부 자극이 없어도 육신육신 찌시거나 음식물을 씹을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통증의 양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치아가 뜨겁거나 찬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충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C. 치료
치료 시기는 의사의 철학이나 환자의 구강 위생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필자는 충치가 발생한 치아의 위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데, 치아의 씹는 부

위인 홈에 발생했다면 즉각적인 치료를 권장하고, 만약 치아들 사이(이와 이가 서로 붙어 있는 부분)에 충치가 발견되고 에나멜에 국한되어 있으면 환자에게 올바른 양치질과 음식 섭취로 충치의 진행 상태를 멈추는 방법으로 치료를 권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상대적으로 큰 치아 부위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치 치료는 썩은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충치가 에나멜이나 그 안쪽의 상아질에 국한됐다면 흔히 얘기하는 패우는 방법, 즉 Filling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충치가 있는 치아 표면을 제거 하고 그곳에 충전물을 채우는 것으로 재료로는 아말감, 레진 등이 사용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 치수로 진행된 충치는 이미 충치균에 의해 감염된 신경조직을 제거하는 신경치료(root canal treatment)와 치아 전체를 감싸서 보호하는 크라운 치료가 필요합니다.

D. 예방
어떤 치료보다 제일 쉽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바로 ‘충치 예방’입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 방법, 적절한 양치질 시간, 치실 사용, 그리고 음식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다수 사람들의 양치 시간은 1분 이내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치질 시간을 측정해 보고 그 동안 얼마나 짧은 시간 양치를 해왔는지 놀랍니다.
양치질 시간은 3분에서 5분이 이상적입니다. 다만 화가 난 듯 거칠게 양치질하지 말고 부드럽게 고른 부위를 닦아야 합니다. 치아 사이는 치실과 워터픽(waterpik)로 클리닝 하고 단음식, 특히 끈적끈적한 과자류나 산기가 있는 탄산음료 등을 자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해 체크업하고 스케일링으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린다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 법률 칼럼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한국 내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까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들은 FBAR(Report of Foreign Bank Account)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한번쯤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거주 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년 (Calendar year)동안 어느 한 시점에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한 적이 있었다면 예외없이 미 재무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지사나 현지 법인에 L-1 (주재원 비자)나 E-2 비자로 파견된 직원 또는 다른 비이민비자로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하여 FBAR 보고를 하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미국 세법에서 부과 의무를 결정하는 거주자 여부는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거주자로 보아 관련 세금에 대한 보고 및 납부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1) 미국 시민 (Citizen) (2) 미국 영주권자 (Green Card holder) 또는 (3)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미국 체류 요건 (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예: 2017년 기준으로 (1) 2017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 혹은 (2) 2017년 (체류 일수의 100% count), 2016년 (1/3 count), and 2015년 (1/6 count)을 합하여 183일이 상인 경우

그 다음으로 고려할 이슈는 세법상 ‘이중 거주자’ 여부입니다. 미국 세법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과 동시에

외국 세법에 의해 외국 거주자가 되어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이민소지자 중 한국 세법상 거주자 이면서,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위 원칙에 의거해서 해당 조세조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 3 조에 따라 아래 순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
(1) 주거 (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 -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2) 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 (Center of Vital Interest) (3)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 (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 (4) 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 (Citizenship)이 있는 국가 (5) 동 개인이 양국의 시민이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 합의.

따라서,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미국 거주자 판정 여부 test에서 기준 (3)에 의해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FBAR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